

#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8호 2002. 4. 16)

총무위원회  
2002. 4. 29(월)

## 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4. 16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2. 4. 16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2. 4. 25 사천시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## 2. 제안설명요지(총무과장 김영고)

### 가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
  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해소
  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 개선(연가수혜범위 확대)

### 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함.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.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복직자의 고충 해소,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어 관련조항 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